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 7. 9 선고 2020나14688 판결 [사해행위취소 및 배당이의 청구의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 7. 9 선고 2020나14688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19가합5363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오정한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정임

변론 종결2021. 6. 11.

판결 선고2021. 7. 9.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19가합5363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C이 2018. 6. 10. 피고에 대하여 한, 액면금 11,000,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부천시,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인천광역시, 발행일 2018. 6. 10.,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의 발행행위 및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작성된 2018. 6. 15.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8년 제350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부담행위를 각 605,487,67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 E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3. 2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52,814,856원을 605,487,671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959,496,684원을 406,823,869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진석

판사이종훈

판사서여정